

참고자료 2. 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

가. 자금지원범위

- 1)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80% 이내로 한다. 다만, 중소기업(비영리법인 포함), ESCO투자사업(성과보증계약에 한함)은 소요자금의 100% 이내,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은 10% 우대(대기업 : 80→90%, 중소기업 : 100%) 한다.
- 2) 시설자금은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·개수공사비, 보수비·설계·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. 다만, 부가가치세,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하며, 보수비는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하여 기 추천액의 50% 이내로 한다.
- 3) 운전자금은 전년도에 당해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, 당해 제품의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자금지원조건

1) 시설자금

사 업 명	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	대 출 기 간	이자율	비고(억원)
ESCO투자사업	500억원 이내 (동일투자자당 150억원 이내)	3년거치 7년분할상환	「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 요령」에 따름	1,350
자발적협약기업투자사업	300억원 이내 (사업장당 250억원 이내)	3년거치5년 분할상환		1,400
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	200억원 이내			1,668
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	30억원 이내			300
수요관리투자사업	50억원 이내			400
집단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	100억원 이내 (사업장당 50억원 이내)	2년거치 2년 분할상환		300
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 사업	150억원 이내 (건설허가사업장당 50억원 이내)		400	
합 계				5,118

주1) 위 표의 대출기간이 「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」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「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」의 규정에 따른다.

주2) 비고란은 지원규모이며,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.

2) 운전자금 (중소기업에 한함)

사업명	지원대상	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	대출기간	이자율
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	· 공단이 인증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 · ESCO	10억원 이내	1년거치2년 분할상환	「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」에 따름

주1)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 1회에 한한다. 다만, 운전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 주2) 운전자금은 해당사업의 시설자금의 지원 금액에 포함하여 운영한다.

다. 자금지원대상자 (자금지원 세부내역은 [별표1]과 같음)

사업명	자금지원대상자
I.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	○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자 또는 동 협약의 기간이 완료되고 계속 협약에 참여하고자 참여의향서 및 해당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
II.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	○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에너지절약시설을 신·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 (다만, 동 지침 적용년도 기준으로 전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'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' 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함)
III.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	○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
IV. 수요관리투자사업	○ 자금지원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시설을 신·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
V. 집단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	○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
VI. 건물효율등급인증 지원사업	○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(지식경제부 고시)에 의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자
VII. ESCO투자사업	○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

※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kemco.or.kr) 참조